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20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이연희 · 이광희 · 임미애
김정호 · 박상혁 · 염태영
박용갑 · 한민수 · 안태준
박홍배 · 이정문 · 정준호
복기왕 · 손명수 · 이춘석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 생략(안 제6조의2)
- 나.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2)
- 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안 제13조)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
화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지구등”을 “지역·지구등(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3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지역·지구등의 타당성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관 지역·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변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으

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를 “자료를 활용하여”로,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실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제2항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평가”로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제도 개요, 지정 및 운영 실적
2. 행위제한의 내용 및 절차
3. 지역·지구등과 관련된 정책·계획·사업 현황
4. 그 밖에 지역·지구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의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지구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행위제한 완화·조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지구등의 통폐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를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평가단”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전문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으로,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을 “제14조의2에 따른”으로, “이행실적에 관한”을 “이행실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단의 구성”을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으로 한다.

1. 제6조의3에 따른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적정성 검토
2. 제13조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4.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지원
5.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자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 중 “운영을”을 “구축·운영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3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조성사업구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산림이용진흥지구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9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갯벌관리구역
10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11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12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	중점경관관리구역
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1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16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17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18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19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21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22	「공항시설법」 제2조	장애물 제한표면

2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24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25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종전부지
2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2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복합환승센터
2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농림지역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환경보전지역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	경관지구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고도지구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방화지구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방재지구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	보호지구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취락지구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개발진흥지구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특정용도제한지구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	복합용도지구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도시혁신구역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	복합용도구역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제5구역, 제6구역)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
55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5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지역특화발전특구
5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록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5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6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6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6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6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6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6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6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6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7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정비구역
71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72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73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74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7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76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7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촌특화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7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종전부지
7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주변개발예정지역
8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15조	대기관리권역
8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82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83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84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85	「도로법」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86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22조	공업지역정비구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

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89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9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9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도시재생혁신지구
9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국가시범지구
9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9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9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도심융합특구
9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버티포트개발사업
9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9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정도서
9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100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10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10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현지보존지역
10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장유산 유존지역
104	「먹는물관리법」 샘물보전구역 제8조의3	샘물보전구역
10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절대보전무인도서
10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준보전무인도서
10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이용가능무인도서
10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10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지정문화유산
1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70조의2	보호구역
1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74조	임시지정문화유산
1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

1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
115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물순환 촉진구역
1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11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11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민북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 민북지역 산지특별관리지역)
1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2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 완충구역)
1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1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23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12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
125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1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채종림등
1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험림
12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산업기술단지
1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1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1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1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1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1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1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재생사업지구
1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
1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공시설구역
1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녹지구역
13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복합구역
1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시설구역

1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원시설구역
142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143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44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14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새만금사업지역
146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세계유산지구 (세계유산 구역, 세계유산 완충구역)
147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148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
14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15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15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152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15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
15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정원조성예정지
15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15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15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혁신성장진흥구역
15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159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160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16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16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예정지역
16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16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165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16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16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
16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16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역세권개발구역

17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 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17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172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17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17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17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17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역
177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178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원보호지구
17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2호	용산공원
18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	용산공원정비구역 (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 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
181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 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 원, 구립공원)
18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18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184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18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18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	천연기념물등
18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8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1조	보호구역
18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42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190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91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생 태·경관전이보전구역)
192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193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194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1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
19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19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19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1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20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20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202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20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
20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2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시장정비구역
206	「전과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2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절대보전지역
20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상대보전지역
2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2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21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212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2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지원도시사업구역
2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국제화계획지구
21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21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
217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
218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219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220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 지역
2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222	「초지법」 제5조	초지
22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22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225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22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평화경제특별구역
227	「폐기물관리법」 제54조	폐기물 매립시설 토지이용 제한구역
22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229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230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2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23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오염행위 제한지역
2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3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23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3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237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238	「항만법」 제45조	항만배후단지
23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
24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2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24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24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24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산·학·연 클러스터
24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246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u>지역·지구등</u> 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 ----- ----- <u>지역·지구등</u>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3조에 서 같다)-----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 ----- ----- ----- ----- ----- ----- . 이 경우 <u>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u>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8조의2(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에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지역·지구등의 타당성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관 지역·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변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은 2년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제도 개요, 지정 및 운영 실적
2. 행위제한의 내용 및 절차
3. 지역·지구등과 관련된 정책·계획·사업 현황
4. 그 밖에 지역·지구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의견 등

② -----

-- 전문기관-----

----- 자료를 활용하여 --

--- 실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지구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

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행위제한 완화·조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지구등의 통폐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평가-----
-----.

<삭 제>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

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촉구 등) ① 제13조제3항-----

-----.

② ----- 전문기관-----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위하여 <u>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 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 1. <u>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u> 2. <u>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 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 가</u> 3. <u>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 적에 관한 점검·평가</u> 4. <u>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 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u> <u><신 설></u> <u><신 설></u> ② <u>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 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u> ③ <u>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u>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기관을 지정하여</u> ----- ----. 1. <u>제6조의3에 따른 지역·지구 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적정성 검토</u> 2. <u>제13조에 따른 지역·지구등 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 가</u> 3. <u>제14조의2에 따른</u> ----- ----- <u>이행실 적</u> ----- 4. <u>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의 심의 지원</u> 5. <u>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 구등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자문</u> 6.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u> <u><삭 제></u> ③ <u>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 정</u> ----- --. 제23조(업무의 위탁) -----
--	--

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u>운</u> <u>영을</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u>구</u> <u>축·운영을</u> ----- -----.
--	---